

어장관리 시행계획(2022~2026) 수립 고시

어장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「어장관리 시행계획(2022~2026)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3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어장관리 시행계획 (2022~2026년)

- ❖ 어장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어장 이용방안 마련 등 종합적·체계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「어장관리 시행계획」을 수립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어장관리법」 제4조(어장관리 시행계획)
-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(2022~2026, 해양수산부)
-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세부시행지침(2022~2026년, 인천광역시 수산과)

II 적용 범위

- 공간적 범위 : 「어장관리법」 제2조의 ‘어장’에 적용
 - 어업면허(정치망 어업, 마을어업), 어업허가(구획어업), 양식업면허(해조류, 패류, 어류, 협동, 외해 등)를 받은 일정한 수면
- 시간적 범위 : 5년('22 ~ '26년)
- 내용적 범위 : 「어장관리법」 제4조

제4조(어장관리 시행계획)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면허·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
2.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
3.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
4. 어장정화·정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Ⅲ

관내 어장 현황

□ 대상어장 : 총 5건, 47ha (마을어업, 구획어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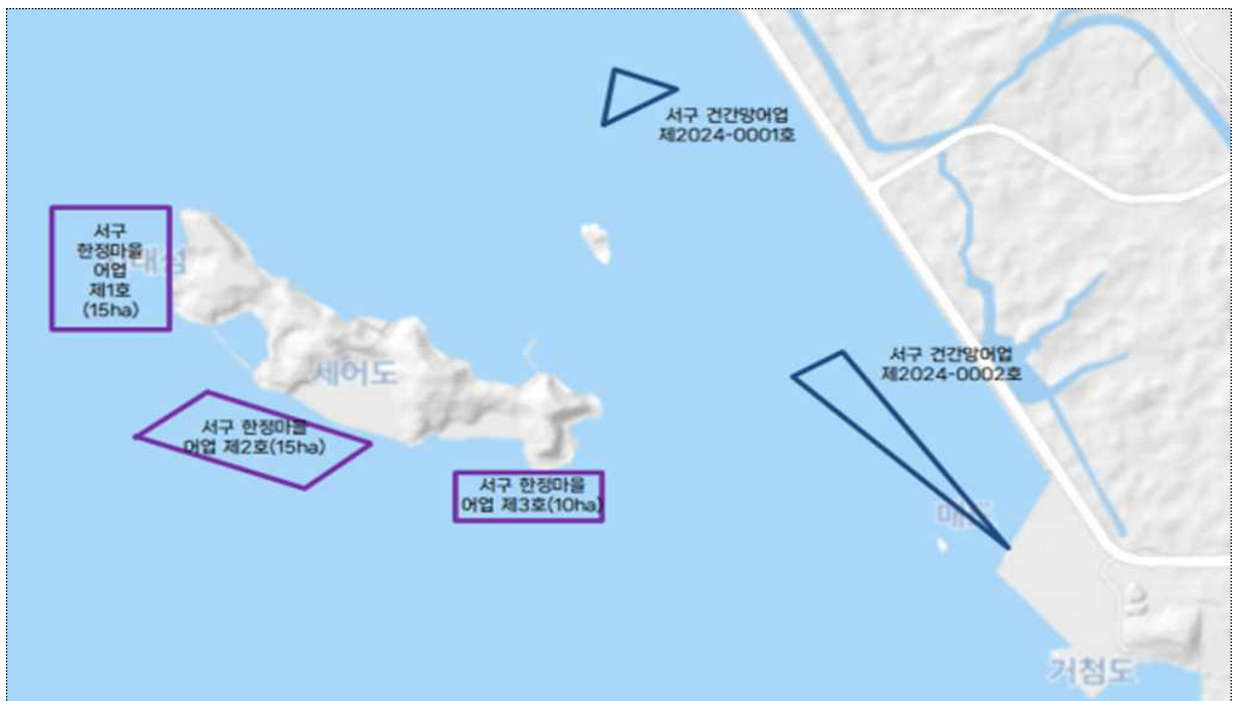
○ 마을어업 : 3건, 40ha (「수산업법」 제7조제1항제2호)

구분	어업종류	인허가번호	어업권자	어장위치	품종	면허기간	비고
1	마을어업 (바닥식)	서구 한정마을어업 제1호 (15ha)	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(연수구 새말로 141)	세어도 지선	가무락, 피조개, 맛, 바지락, 낙지 등	2024. 4. 10. ~ 2027. 4. 9.	
2		서구 한정마을어업 제2호 (15ha)				2024. 4. 10. ~ 2027. 4. 9.	
3		서구 한정마을어업 제3호 (10ha)				2024. 4. 10. ~ 2027. 4. 9.	

○ 구획어업 : 2건, 7ha (「수산업법」 제40조제3항)

구분	어업종류	인허가번호	어업권자	어장위치	품종	허가기간	비고
1	건간망어업	서구 건간망어업 제2024-00001호	박○○	세어도 지선	송어, 새우 등	2024. 01. 01. ~ 2028. 12. 31.	
2	건간망어업	서구 건간망어업 제2024-00002호	홍○○	세어도 지선	송어, 새우 등	2024. 01. 01. ~ 2028. 12. 31.	

○ 대상 어장 개략 위치도



※ 본 위치도는 대략적으로 표기한 사항으로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IV 제4차 어장관리 시행계획

□ 비전 및 목표 (해양수산부 기본계획)

비 전	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 어장 조성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목표	어장관리해역 지정(' 21)1개소 → (' 26)3개소
	인증 부표 전환(' 21)38% → (' 24)100%
	어장환경평가 대상 업종 확대(' 21)1종 → (' 25)6종
	실시간 어장환경 관측시스템 확대(' 21)143개소 → (' 26) 200개소



추진전략	중점과제
1 청정 어장 이용·보전	⇒ ① 어장관리해역 확대 및 환경개선 ② 발생오염 최소화 및 사전예방 ③ 양식생산관리제도 기반 구축
2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	⇒ ④ 어장평가 체계 고도화 ⑤ 어장관리사업 이행력 강화 ⑥ 참여형 어장관리체제 구축
3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	⇒ ⑦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⑧ 미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

□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① 청정 어장 이용·보전

- 어장관리해역 지정에 대한 어장환경 개선 조치 이행
 - 어장 내 오염원 측정 및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어장환경 모니터링 (국립수산과학원)을 통해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어장관리가 필요하여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, 어장면적 조정, 시설 이전·철거, 면허·허가 동시 갱신, 어장휴식 등 어장환경 개선조치 이행

②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

- 어장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홍보, 어장관리 의무 이행 요청
 - 어장청소 미실시자에 이행강제금* 도입, 어장청소 방법 세분화, 어장환경평가 고도화 등으로 어장관리 제도 순응도 제고

* (기존) 어장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→ (변경)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신설

☞ 어장청소 관련 어업인 등에 교육·홍보 및 어장청소 이행 관리

※ 어장관리 의무 이행사항 (어장관리법 제12조, 제13조 등)

- 어업활동 중 그물·बाट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투기·방치 금지
- 어구 및 양식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표 사용 시 규격물품 사용 의무
- 어장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 실시 의무

○ 어장정화·정비 실시계획 수립

-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「어장정화·정비 실시계획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관내 어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실시
- 마을어장(3건)에 대한 어장청소 안내(고지) 및 이행여부 확인

구분	종류	인허가번호	어업권자	어장위치	품종	면허기간	어장청소 주기 (만료기한)
1	마을어업 (바닥식)	서구 한정마을어업 제1호 (15ha)	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(연수구 새말로 141)	세어도 지선	가무락, 피조개, 맛, 바지락, 낙지 등	2024. 4. 10. ~ 2027. 4. 9.	5년 (2025. 10. 23.까지)
2		서구 한정마을어업 제2호 (15ha)				2024. 4. 10. ~ 2027. 4. 9.	5년 (2025. 9. 12.까지)
3		서구 한정마을어업 제3호 (10ha)				2024. 4. 10. ~ 2027. 4. 9.	5년 (2025. 7. 24.까지)

※ 주기 설정 근거 : 어장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

③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

○ 어장환경정보망 및 양방향 정보서비스 고도화

- 수산재해 피해 저감,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장환경정보망 제공 및 양방향 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
- 어업현장에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정보를 요구,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를 제공*

* 실시간 관측 정보를 홈페이지(www.nifs.go.kr/risa), 스마트폰 앱, SMS 서비스 개시

V

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전략	세부추진내용	일정
① 청정 어장 이용·보전	어장관리해역 지정에 대한 어장환경 개선 조치 이행	
	· 어장면적 조정, 허가·면허 동시갱신, 어장휴식 등	필요시
②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	어장환경평가 대상 확대 및 평가 기준 강화 안내	'22.~
	어장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홍보 등	
	· 어장청소 이행명령 등 신설 안내	'22.~
	· 어장관리 및 청소 의무 이행 관리	'25.
	· 어장정화·정비 실시계획 수립	'22.~
③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	어장환경정보망 및 양방향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정보제공	'22.~

VI

향후계획

- 2025. 4. : 어장관리 시행계획 수립 고시
- 2025. 6.~10. : 어장관리 의무이행 독려 및 현장점검 실시
- 2027년중 : 어장관리 시행계획(2027~2031) 수립